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규모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80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중소기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3
2. 폐수배출시설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9
※ 참고자료	13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시행규칙 별표5)	13
2. 경기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사례	15
3.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 지원 사업	17
4.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18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0일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항 신설 및 안 제82조제3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개정안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폐수배출시설)이 중소기업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현행법 제33조제1항¹⁾은 폐수배출시설²⁾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35조제1항³⁾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⁴⁾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폐수배출시설 56,430개소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4·5종 사업장⁵⁾)은 54,204개소(96%)이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

-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는 석탄광업시설, 금속 광업시설, 식품제조시설 등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종들을 규정하고 있음. 2021년 12월 기준 폐수배출시설은 총 56,430개의 업소임.
- 3)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그 종류를 정하고 있음. 물리적 처리시설(스크린, 분쇄기, 응집시설 등), 화학적 처리시설(화학적 침강시설, 중화시설, 살균시설 등),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살수여과상, 소화시설 등)이 이에 포함됨. 참고자료1 참조.
- 5) 현행법령 상 폐수배출 사업장의 규모 구분은 다음과 같음(「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49개소 중 811개소(83%)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파악되고 있음.

[폐수배출시설 현황(2021.12.기준)]

(단위 : 개, 천 m³/일, 천 kg/일)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업소수		56,430	376	547	1,303	2,549	51,655
폐수발생량		5,006	3,088	466	372	240	840
폐수방류량		3,849	2,623	428	351	180	267
BOD	발생	1,810	1,011	327	187	106	179
부하량	방류	15.2	7.4	1.5	1.9	1.0	3.4

자료: 환경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규모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4,390 (100%)	108 (2.5%)	224 (5.1%)	408 (9.3%)	708 (16.1%)	2,942 (67%)
2017년	768	16	14	65	137	536
2018년	675	24	44	79	97	431
2019년	1,096	18	51	86	199	742
2020년	902	29	69	107	128	569
2021년	949	21	46	71	147	664

자료: 환경부

한편,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수질오염물질 관리가 취약하고 배출업소가 산재하고 있는 대구·구미지역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사업장 중 42개(84%) 사업장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⁶⁾ 수질오염물질 저감 효율 증대 및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개선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⁷⁾

6) 환경부 용역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연구 결과보고서(2022)” 참조.

7) 경기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 참고로,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2010년부터 경기도

개정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술·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⁹⁾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¹⁰⁾),

화학 사고의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북부지역에 위치한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선자금 132억원을 지원해 왔고, 2022년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평균 83.6%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참고자료2 참조.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 ④ (생략)

9)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SOx, NOx)을 배출하는 약 10,000개소의 4·5종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였음(대상 사업장은 약 6,200개소). 관련 자료는 참고자료3 참조.

10)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제4조¹¹⁾).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① 현행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자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그 설치 및 개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반하고,

② 현행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¹²⁾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과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둘째,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60개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302억 7,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재정 부담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1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방z시설 설치사업자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방z시설 개소수 (A, 개소)	20	20	20	50	50	160	-
지원 단가 (B, 백만원/개소)	200	204	208	212	216	-	-
소 계 (C=A×B, 백만원)	4,000	4,080	4,160	10,600	10,800	33,640	6,728
국비 (50%)	2,000	2,040	2,080	5,300	5,400	16,820	3,364
지방비 (40%)	1,600	1,632	1,664	4,240	4,320	13,456	2,691
추가재정소요	3,600	3,672	3,744	9,540	9,720	30,276	6,055

- 주 1. 유사 사업의 사례에 따라 자부담 10% 가정
 2. 방z시설 개소수 및 지원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폐수배출시설의 거짓 변경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3항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u>아니한</u> 자	3. ----- ----- --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³⁾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¹⁴⁾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벌칙 적용¹⁵⁾이 가능한 것과 달리,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과태료 수준의 경우 또한 현행 제82조제3항제3호¹⁶⁾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금액을 과태료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4 참조.
- 14) 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사항은 폐수배출량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등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
- 15) 「물환경보전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16)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소음·진동관리법」¹⁷⁾ 등 기타 법률에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법례]

법령	과태료 부과 요건	과태료 (백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1호)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제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6호)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지하수법 (제40조제1호)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3

17)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령	과태료 부과 요건	과태료 (백만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0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20.>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 가. 스크린
- 나. 분쇄기
- 다. 침사(沈砂)시설
- 라. 유수분리시설
-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 바. 혼합시설
- 사. 응집시설
- 아. 침전시설
- 자. 부상시설
- 차. 여과시설
- 카. 탈수시설
- 타. 건조시설
- 파. 증류시설
-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 가. 화학적 침강시설
- 나. 중화시설
- 다. 흡착시설
- 라. 살균시설
- 마. 이온교환시설
- 바. 소각시설
- 사. 산화시설
- 아. 환원시설
-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가. 살수여과상
- 나. 폭기(瀑氣)시설
-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 참고자료 2: 경기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사례

(환경부 제공자료)

□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피혁 등 북부 주력산업의 환경시설(수질) 설치·개선 지원, 북부지역 수질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
- (근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0년 ~
- (사업비) '23년 1,021백만원(도비 328, 시·군비 387, 자부담 306)
* 보조비율 : 지방비 70%(도 40%, 시·군 60%, 최대 70백만원), 자부담 30%
- (사업대상) 경기도 북부지역(한탄강 수계 등)
- (사업내용)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

□ 추진실적 및 효과

-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금액(백만원)			사업내용(개소)				
	계	도	시·군	계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술지원	ISO14001 인증지원	폐열재이용 시설 등
계	13,174	4,608	8,566	1,561	414	1,084	41	22
'10~'19	11,130	3,724	7,406	1,491	344	1,084	41	22
'20	531	228	303	20	20	-	-	-
'21	763	328	435	28	28			
'22	750	328	422	20	22			

- '22년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평균 83.6% 개선 효과

구 분	수질 농도(mg/L)				
	BOD	TOC	SS	T-N	T-P
지원 전	186.3	360.9	110.2	13.2	1.23
지원 후	7.4	11.4	11.6	7.2	0.12
개선효율(%)	96.0	96.8	89.4	45.5	90.2
저감효과	83.6%				

* '18년 70.8% ⇒ '19년 71% ⇒ '20년 86.5% ⇒ '21년 85.8% ⇒ '22년 83.6%

□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례

엘림섬유(2021년)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62		업종	섬유임가공업		
지원사항	시설명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금액 (천원)	총액 43,000	지원금 30,000	자부담 13,000
	개선사항	폐수처리시설의 모래 및 활성탄 여과기 추가 설치, 방류수 처리효율 향상				
	오염도 측정결과	측정항목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BOD	176.8	15.1	91.5	
		COD	63.2	27.6	56.3	
		TN	16.320	3.287	79.9	
		SS	24.5	1.7	93.1	



(주)삼부(2020년)						
소재지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956번길 55		업종	섬유가공업		
지원사항	시설명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금액 (천원)	총액 78,300	지원금 30,000	자부담 48,300
	개선사항	폐수처리장 (1차)생물학적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2차)물리·화학적처리 시설 증설 공사 지원				
	오염도 측정결과	측정항목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COD	1261.5	5.0	99.6	
		TN	55.4	5.983	89.2	
		TP	36.0	0.075	99.8	
		SS	4140.0	2.0	100.0	



※ 참고자료 3: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지원 사업

(환경부 제공자료)

1.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제1항제7호*

*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 대상*

☐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_x, NO_x)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인접사업장 등

* (근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지원내역 및 예산

☐ (지원규모) 전국 대기 4·5종 사업장 약 62천개소 중 방지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수를 고려해 산정

☐ (지원예산) 5년간('19~'23) 총 1.5조원 투입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예타면제)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20조제7호*에 따라 면제('19.4)

*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참고자료 4: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 허가 및 신고 대상

허가(영 제31조제1항)	신고(영 제31조제2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1.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변경허가(영 제31조제3항)	변경신고(규칙 제38조)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신고〉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 변경신고〉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